

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

1. 신청인	① 성명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소	④ 근로자 유형	[] 청년(15세~34세) [] 그 외

2.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 기간(5년, 3년)

⑤ 가입일	년 월 일
⑥ 종료일	년 월 일

3. 성과보상기금 해지 사유

⑦ 납입 기간(5년·3년) 충족 []	⑧ 회사의 폐업·휴업 []	⑨ 법인의 해산 []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

4.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수령한 공제금

⑩ 총 수령 금액	원
- ⑪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(감면대상)	원
- ⑫ 근로자가 납부한 공제납입금(既 과세)	원
- ⑬ 그 외 금액(이자소득세 과세)	원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원천징수의무자 귀하

첨부서류	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공제납입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-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.
-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 다만,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및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로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가. 2024.12.31. 이전 가입한 경우: 5년
나. 2025.1.1. 이후 가입한 경우: 3년
- 감면을 신청한 경우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 시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의 50%(청년근로자 90%), 중견기업의 경우 30%(청년근로자 50%)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